서울특별시 아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1077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1. 수정이유

○ 야외운동기구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 지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므로 구체적으로 지 정하지 아니하며,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므 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야외운동기구 및 총괄부서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)
-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를 명시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아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

"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"을

"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 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"로 한다.

같은 조 제3호 중

"관광체육국을 말한다"를

"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"로 한다.

안 제4조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야외운동기구"란 서울특별시장(이	1. "야외운동기구"란 서울특별시장(이하
하 "시장"이라한다)이 <u>시민의 체력증</u>	"시장"이라한다)이 <u>야외에 고정적으로</u>
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	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
<u>기구를</u> 말한다.	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
	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.
3. "총괄부서"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하여 관리하는 <u>관광체육국을 말한다.</u>	3. "총괄부서"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하여 관리하는 <u>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.</u>
제4조(관리주체) ① (생략)	제4조(관리주체)(현행과 같음)
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.	<삭 제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야외운동기구"란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.
- 2. "이용자"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.
- 3. "총괄부서"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.
- 4. "관리부서"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, 하천,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5. "영조물배상"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리주체)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.

제5조(설치장소)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, 쉼터 등 공 공장소에 설치한다.
- 2.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 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3. 문화재보호구역, 하천부지, 산지, 도로부지,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4.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.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.

제6조(설치기준 등)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.

-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.
-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안내문 게시)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제8조(안전점검 등) 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,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

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.

제9조(관리대장의 작성·관리)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·보수·철거하였을 경우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영조물배상공제)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 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